

청약 철회 통지서

방문판매법 § 8 / 할부거래법 § 8 / 전자상거래법 § 17

1. 계약 정보

구매 경로 : 방문판매 · 전화권유 · 다단계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· 통신판매
매장 방문

계약일 : 20 년 월 일

재화 수령일 : 20 년 월 일

품목 · 서비스 :

결제 금액 : 금 원

결제 수단 : 신용카드 할부 일시불 계좌이체 기타

2. 철회 의사

본인은 위 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오니,
대금 환불 및 청약 철회 효과의 이행을 요청합니다.

- 청약 철회 근거: 방문판매법 제8조 할부거래법 제8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
- 철회 의사표시일: 20 년 월 일 (본 내용증명 발송일)
- 환불 계좌: _____

환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일 3일 이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연 시 대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(연 40% 이내, 전자상거래법 시행령)이 발생합니다.

20 년 월 일

발신인 (구매자) _____ (인)